

제422회 정례회
'24. 11. 28.(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현장해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의 시각장애인은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8,669명이며,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 96,896명의 8.9%로 법령에 따른 장애유형(15개) 중 지체(44.8%), 청각(14.7%), 지적(11.7%)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현황 2024. 9. 기준>

(단위: 명)

	충북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록 장애인	96,896	40,571	13,387	10,273	3,102	4,925	4,183	2,418	4,565	9,916	7,257	2,659
시각 장애인	8,669	3,726	1,356	840	273	385	378	218	440	293	534	226

- 시각장애인은 장애유형 중 4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직업 선택, 정보에의 접근 및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체규정	제5조	의료비 지원
	제6조	현장해설 지원
	제7조	편의시설
	제8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9조	비용 지원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보칙규정	제11조	사무의 위탁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 , “현장해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용어에 대해 정의 하였음.

-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 ‘현장해설’: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안 제5조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 각막이식 수술 지원, 안과 진료 및 그 밖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1) 및 제34조2)에 따른 것으로 법적 및

1)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동일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안 제6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³⁾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 시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북, 제주 등 일부 시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음.

○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정기적 실태점검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⁴⁾, 제11조⁵⁾ 및 제112조⁶⁾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의 역할인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 지난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충북도청을 포함한 도 내 18개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춰 볼 때, 본 규정은 필요하며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 지도를 받게 하는 것

3)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5)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6)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충청북도 내 관공서*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

*조사 대상 관공서: 충청도청, 청주시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보은군청, 옥천군청, 영동군청, 증평군청, 진천군청, 괴산군청, 음성군청, 단양군청

(단위: 개소, %)

	조사 대상지 개소수	적정 설치율	부적정 설치율	미설치율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관공서 300m이내)	334	0.9	80.2	18.9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관공서 300m이내)	334	5.4	28.4	66.2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관공서 300m이내)	139	0.7	99.3	0
인근 대중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설치	15	0	20	80

※자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보건복지부, “2023년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2023. 12.

- 안 제8조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이 4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업종 또한 안마업 등 서비스 업에 편중돼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내용상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안 제9조 및 제11조는,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 내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